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2. 추가적으로,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한다.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가.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다.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렵, 밧사냥,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상품¹⁾

- 라.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마. 라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 바.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사.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토양으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 아. 당사국의 영토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 해저 또는 해저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 또는
 - 2)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
-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제 3.3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1) 이 호에도 불구하고, 비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은 이 조에 따라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text{됐다, } \text{○뻬숏썸갯똥} (RVC) = \frac{\text{ㄱ꽃똥ㅇㅇ"} (FOB) - \text{갯똥갯똥} \text{○뻬} (VNM)}{\text{ㄱ꽃똥ㅇㅇ"} (FOB)} \times 100$$

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text{됐다, } \text{○뻬숏썸갯똥} (RVC) = \frac{\text{똥갯똥} \text{○뻬} (VOM)}{\text{ㄱ꽃똥ㅇㅇ"} (FOB)}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2.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
임보험료포함가격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해 획득된 재료의 경우, 화물
비, 보험료, 포장비 및 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거
래 가치, 또는

다. 자가 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재료의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
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가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이 조에 언급된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3.4 조

중간재

1. 원산지 상품이 후에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때에는,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2. 비원산지 상품이 후에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때에는,

가.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으로는,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그리고

나.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으로는,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제 3.5 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의 목적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또는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또는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아. 다른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차. 동물의 도살, 또는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공정이 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해 당사국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가.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나. **단순한 혼합**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나, 화학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적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 3.6 조

누적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느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제품은 제3.1조에 따라 수립된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3.7 조 최소허용수준

1. 다음의 경우, 부속서 3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그 상품의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모든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었을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항은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 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8 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1.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위해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를 결정할 때, 모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에 의해 구별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해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 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계속하여 사용된다.

제 3.9 조 세트

HS의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세트는 그 세트의 모든 구성 요소가 원산지 상품인 때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때에는,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세트의 총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세트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10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때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개로 확인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11 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1. 포장재료 및 용기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소매 판매를 위해 상품을 포장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 가. 제3.1조제1항가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상품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하거나,
- 나. 제3.1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상품은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하거나, 또는
- 다.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제 3.12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 중인 상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3 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2항에 정의된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에너지, 촉매 및 용제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 기구 및 보급품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장비 및 보급품

라. 공구, 금형 및 주형

마.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된 예비부품 및 재료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장비 및 건물의 운용에 사용된 윤활제, 윤활유, 조합용 재료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사. 그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그 생산의 일부임이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제 3.14 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
- 나.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 1)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2)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된다.

- 가.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 그리고
- 나.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

제 3.15 조 영역 원칙

1. 제3.1조부터 제3.14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이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있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당사국

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 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나에 열거된 상품은 그러한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공정 및 처리를 거쳤더라도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16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해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의 항구 또는 입국 장소까지의 운임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하는 원산지 국가의 상품 가격을 말한다.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수출자란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여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수송수단과 관계없이, 최종 수출 항구 또는 최종 수출 지점까지의 수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총의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재료란 구성품, 성분, 원료, 부품 또는 부분품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제3.1조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을 재배, 사육, 추출, 채집, 수집, 채굴, 수확,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 해석 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구체적 규정 또는 구체적 규정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 나. 세번변경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 다. 구체적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 그 규정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개별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을 거쳐야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라. 구체적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HS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수준에서 세번 조항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그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제외된 세번 조항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마.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그러한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 류란 HS의 류를 말한다.
 - 호란 HS상 관세분류번호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 부란 HS의 부를 말한다. 그리고
 - 소호란 HS상 관세분류번호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